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경 의원 외 9명
- 나. 의안번호: 제2946호
- 다. 발의일자: 2025. 8. 11.
- 라. 회부일자: 2025. 8. 14.

2. 제 안 사 유

- 2022년 동 조례 상위 법령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‘시·도 환경교육계획 수립’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고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음.
- 이에 2023년 서울특별시에서도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5년마다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- 현재 시행 중인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‘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’ 및 ‘이행평가 결과의 환류’를 신설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(안 제4조제2항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.

5. 검 토 의 건

-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⁾」과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에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,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,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, 자료의 개발 및 보급, 민간 활동의 활성화,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제2항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‘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’과 ‘이행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’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으며,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1) 제6조(시·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